경제지원과

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

의안 번호	

제출연월일: 2026. 11. .
제 출 자: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

1. 제안이유

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협약보증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지원근거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(재정 지원)
- 「인천광역시 영종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6조(특례보증 지원)

나. 출연기관 : 인천신용보증재단

다. 소요예산 : 100백만원 (일반회계 출연금)

라. 예산확보 : 2027년 본예산 반영

마. 사업내용 : 특례협약보증을 통한 소상공인 융자 지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(재정 지원)
- 「인천광역시 영종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6조(특례보증 지원)

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

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협약보증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· 경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□ 근　　거

○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(재정 지원)

○ 「인천광역시 영종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6조(특례보증 지원)

□ 출연기관현황

○ 기 관 명 : 인천신용보증재단

○ 설립일자 : 1998. 4. 28.

○ 설립근거 :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(설립)

○ 설립배경 :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복리 증진

○ 주요사업 : 신용보증, 구상채권 관리, 기본재산 관리, 경영지도 지원

신 용 보 증	소기업·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보증 지원
구상채권 관리	보증사고대출(연체 등) 대위변제 및 구상채권 관리
기본재산 관리	보증재원(출연금) 확충 등 기본재산 관리
경영지도 지원	소기업·소상공인 교육, 컨설팅 등 경영지도 지원

□ 주요 내용

○ 사 업 명 : 「소상공인 특례협약보증 융자 지원」을 위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

○ 출 연 금 : 100백만원

○ 지원대상 : 관내 소상공인 및 소기업

○ 사업내용 : 특례협약보증을 통한 소상공인 융자지원 및 이자지원

- 융자조건 : 1년(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)
- 이자지원 : 이자 2.5% 지원(최초 3년간)

※ 특례협약보증 보증지원 현황

(단위 : 건, 백만 원)

구 분	합 계	~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
건 수	1,150	352	63	128	121	128	119	162	77
금 액	25,217	6,468	1,196	2,495	2,350	2,490	2,345	4,888	2,985

※ 2026. 10월 말 기준 융자 여력 95% 소진

○ 출연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연 도	~2012년	2013년	2014년	2015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
금 액	200	-	150	-	-	200	-	100
연 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	합 계
금 액	100	100	200	200	200	250	200	1,900

○ 출연의 필요성

- 2026년도 출연한 특례협약보증 융자 여력이 95% 이상 소진되어 지원 여력이 부족한 실정임
- 협약보증은 업체당 지원 한도가 최대 1억 원으로,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소기업·소상공인의 자금 수요와 경영 안정에 적합하여 적기 지원을 위한 추가 출연이 필수적임
- 추가 출연(1억 원)을 통해 출연금 대비 15배의 보증여력 확보

□ 출연금 지원 기대효과

○ 출연을 통한 특례협약보증 여력 확보로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적기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안정화와 고용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

상위 및 관계 법령

【 소상공인기본법 】

[시행 2025. 10. 1.] [법률 제21065호, 2025. 10. 1., 타법개정]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“소상공인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.

1.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
2.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
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. 다만,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【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】

[시행 2025. 4. 1.] [법률 제20869호, 2025. 4. 1., 일부개정]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(奬學)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
제20조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비용추계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,「인천광역시 영종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6조(특례보증 지원)에 따른 소상공인 특례협약보증 융자지원 사업 추진

2. 비용추계 결과

○ 추계의 전제

- 소상공인 특례협약보증 융자여력 확보를 위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

○ 추계 결과 : 총 7억 원

(단위 : 억 원)

구 분	합 계	2027년	2028년	2026년	2030년
일반회계 출연금	7	1	2	2	2

○ 재원조달 방안 : 자체재원

3. 연도별 비용추계표

(단위 : 억 원)

구 분		2027년	2028년	2026년	2030년	합 계
세 출		**1**	**2**	**2**	**2**	**7**
출 연 금		1	2	2	2	7
재원 조달		**1**	**2**	**2**	**2**	**7**
자체	소 계	1	2	2	2	7
재원	일반회계	1	2	2	2	7

4. 부대의견

○ 소상공인 특례협약보증을 위한 출연금은 당해 연도 예산 상황에 따라 당초 추계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5. 작성자

공항경제국 경제지원과장 조정희